「2023 컨벤션 유치 및 개최지원」 정기1차 공고

【첨부】제출서류 안내 및 관련 서식

- 1~4: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 및 관련 서식

- 붙임1: 참가자 명단 서식

- 붙임2 : 인천광역시 및 인천관광공사 CI

- 붙임3: 지원조건 관련 자료 다운로드 안내

- 붙임4: 인천 MICE 지속가능 가이드라인 및 증빙안내

- 붙임5 : 인천 관광 등 홍보 자료

「2023 컨벤션 유치 및 개최지원」 정기1차 공고

인천관광공사는 MICE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「2023 컨벤션 유치 및 개최지원」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2월 3일

인 천 관 광 공 사 사 장

□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2023 컨벤션 유치 및 개최지원

○ 지원대상 : 국내·외 컨벤션을 인천으로 유치 및 개최하고자 하는 기관·단체

○ 지원내용 : 유치·홍보·개최 단계별 재정지원 및 맞춤지원 ○ 지원규모 : 행사규모 및 인천 연계성 등에 따라 차등지원

□ 지원행사요건

구 분		내 용	
	국제회의	1. [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] 국제기구, 기관 또는 법인·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,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며, 그 중 3개국 이상의 외국인 50명 이상이 참가하고,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	
컨		2. [UIA 국제회의 기준] 국제기구가 주최/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회의	
벤 션		3. [ICCA 국제회의 기준] 학·협회 주최, 정기 개최되며 3개국 이상을 순환하는 참가자 50명 이상인 회의	
	국내회의	•참가자 200명 이상이며,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	
	기타	· 상기 행사 외에, 인천에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회	

※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」, UIA, ICCA 국제회의 구분기준에 의거

□ 지원종류

단계	종	류	지원대상	지원규모
1	유치지원		인천으로 유치를 추진하는 국제회의	최대 30,000천원
2	홍보지원		인천 유치 확정 이후, 해외 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국제회의	최대 20,000천원
3	개최 지원	일반	당해 연도 인천에서 개최되는 컨벤션	최대 100,000천원
		간소화	당해 연도 국제기구 혹은 해외법인이 인천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	최대 5,000천원
맞춤지원		원	당해 연도 인천에서 개최되는 컨벤션	규모별 상이

□ 지원세부기준(필독)

구 분	내 용			
지원대상	•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에 한해 신청 가능(개인 불가) ※ 개최지원(간소화)의 경우, 국제기구 혹은 해외법인고객도 신청 가능			
	· 오프라인과 하이브리드 회의 유치·홍보·개최지원 가능(순수 온라인 회의 지원 불가)			
지원횟수	• 1개 행사에 대해 유치지원은 총 2회, 홍보·개최 지원은 각 1회 신청 가능 ※ 단, 유치·홍보지원의 경우, 전염병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 취소된 행사에 한해 1회 추가 지원(최대 500만원) 가능			
	• 유치·홍보·개최지원과 맞춤지원(환대서비스, 홍보물, 기념품 등) 중복신청 가능			
	•[유치/홍보지원] 신청서에 기재한 전차대회 2회 평균 인원의 120%를 인정치로 하고, 공문을 통해 사유 제출 시 내부검토를 통해 추가 인정 가능			
참가인원	• [개최지원] 온·오프라인 합산 참가인원 기준으로 하며, 온라인 참가인원 증빙방법은 담당자와 신청단체 협의 후 결정 ※ 결과보고 시, 국적, 성명, 소속 정보가 누락된 참가자의 경우 불인정 • 신청인원 대비 결과인원 기준 미달 시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(세부내용 p7 참조)			
지원금 산출	 • [유치지원] 유치를 위한 해외회의의 오프라인, 하이브리드 구분없이 지급 • [홍보지원] 참가하는 해외 국제회의가 하이브리드일 경우, 오프라인 대비 지원금 70% 지급 • [개최지원] 하이브리드 개최 시, 오프라인 대비 지원금 70% 지급(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참가인원이 많은 경우 지원 불가) ※ 단,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사와 신청단체 협의 			
사용처	· 개최지원은 <u>인천지역 업체 60% 이상 활용 필수</u> (가능한 사용처 없을 시 공사와 사전 협의)			
(개최지원금 심사 시) 가점항목	· ICCA 또는 UIA 국제회의 인정여부· 인천 관광 프로그램 운영· 신청기관의 향후 인천 재개최 확정· 지속가능한 행사또는 과거 인천 개최 이력· 그 외 내부 심사표에 의거한 가점항목· 참가자 1,000명 이상의 대규모 컨벤션			

□ 지원항목

단 :	계	내 용			
유치지원		• [유치준비비] 유치제안서/PT 제작, 기념품/홍보물 제작, 물품 운송비 • [해외 현장 유치활동비] 해외 공식 연회비 및 공연(Incheon Night), 부스운영, 공식행사 등록비(최대 2인), 유치단의 숙박 및 항공비(최대 2인 스탠다드룸, 이코노미석까지 가능) • [본부단체 관계자* 사전방한(인천 답사)] : 숙박 및 항공비(최대 2인 스탠다드룸, 비즈니스석까지 가능) * 임원 및 의사결정권자에 한함 ※ 유치준비비 또는 활동비는 유치가 결정되거나 유치PT가 이뤄지는 해외회의 참가 시 지원			
홍보지원		• [홍보준비비] 기념품/홍보물 제작, 물품 운송비 등 • [해외 현장 홍보활동비] 해외 공식 연회비 및 공연(Incheon Night), 부스운영, 홍보단의 숙박 및 항공비(최대 2인 스탠다드룸, 이코노미석까지 가능) ※ 해외에서 개최되는 직전차대회 또는 유사회의 참가 시 지원			
개최 지원	일 반 간 소 화	・행사장 임차료(컨벤션센터, 호텔 등) 및 숙박비 ・공식 연회 식음료비 및 공연 ・인천 관광 프로그램 운영비 ・홈페이지 및 참가자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	·중계소 조성, 화상·음향장비 등 기자재 렌탈비 ·기념품/홍보물 제작 ·방역물품, 방역소독 등		
맞춤지원		• 환대서비스(웰컴셔틀버스, 웰컴데스크, 테마관광(버스 임대료, 가이드비) • 인천 홍보물·홍보영상 • 인천 기념품	• 인천 Young MICE 리더 인력 • 인천시티투어버스 티켓 할인 • 컨설팅, 지지서한 등 행정지원		
지원불가		 자산 취득 목적의 장비 구매 등 연사초청비 및 강연비, 스탭 인건비 등 인건비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항목(1개의 지출증빙으로 1개 기관에서만 지원 가능) ※ 한국관광공사 등 타 기관과 다른 항목으로 중복 지원 가능 			

※ 상기 외의 지원항목으로 지원 희망할 경우, 공사와 신청단체 협의 후 결정

□ 지원조건

- 행사 관련 인천 홍보 ※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
 - 개최지원(일반) 택2, 개최지원(간소화)·유치·홍보지원 택1
 - ①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 후원명기 및 로고 노출 ※ 2건 이상(홈페이지, 영상백월, 기념품, 프로그램북, 현수막, 홍보물 등)
 - ② 연회 및 공식 행사 시 인천홍보 영상 상영
 - ③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자 대상 인천 관광 정보 안내 ※ 홈페이지가 없을 시, 온라인 홍보채널 등 활용(개최지원에 한함)

○ 행정사항

- 정보 허위 및 중복 기재 또는 지출증빙 서류 위조 적발 시,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시 불이익 조치
- 유치 및 홍보 지원금 수령 후 개최도시 변경 시, 지원금 환수 (발생이자 등 포함) 및 향후 지원 시 불이익 조치
 - ※ 단, 코로나19 등 전염병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획 변경 시 담당자와 시전 협의
- 행사 개최 이후 익년 6월말까지 행사 홈페이지 도메인 유지
- 주최기관 및 참가자 대상 각종 설문조사 실시 협조
- 주최기관 및 대행사 대상 현장 모니터링 및 미팅 협조
- 전염병 대응 방역지침, 안전관리지침 준수 철저

□ 지원제한

- 인천광역시 및 인천관광공사 타 유관부서 재정지원 중복 불가
- 관련법령 및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
- 호화, 사치,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
- 정치, 종교 행사 등 일부 행사 ※ 행사명칭과 관계없이 정치적·종교적 행사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 가능

□ 지원절차



※ 유치제안을 통해 개최되는 컨벤션의 경우, 심사 과정을 생략하며 유치 당시 제안 금액 지원

1) 신청·접수

○ 접수시기 : 정기 또는 수시 접수

- 정기접수 : 연 2회(상·하반기)

구 분	지원공고	신청기간	심사기간	지원통지
정기1차	2.03(금)~2.22(수)	2.13(월)~2.22(수)	2.23(목)~2.28(화)	3.02(목)
정기2차	7.03(월)~7.28(금)	7.17(월)~7.28(금)	7.31(월)~8.03(목)	8.04(금)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(지원금 소진 시 조기마감)

- 수시접수 : 유치·홍보·개최 활동 시점의 최소 30일 전 ※ 수시 접수는 정기 접수 후 잔여 예산이 있을 시에만 가능
- 신청방법 : 인천MICE뷰로 홈페이지(incheoncyb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 - 홈페이지 → 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MICE 지원 → 지원신청/관리
- 지원신청 제출서류 : [첨부. 제출서류 안내 및 관련 서식] 참고
 - 공문, 사업자등록증, 신청서, 행사 참고자료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등 유치·홍보·개최 각 유형별 안내에 따른 서류 제출

2) 내부심사

○ 행사 규모,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, 인천 연계성 등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함

3) 지원승인 및 이행서약서 접수

- 지원결정 통보 및 지원금 교부조건 안내
 - 심사결과에 따른 지원 결정 내용 통보(공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)
- 이행서약서 접수
 - 지원결정 통보 후 7일 이내 제출

4) 지원내용 변경

- 신청 시 제출했던 지원내용 관련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
- 변경 가능사항 : 사업계획의 변경(행사명, 행사기간, 장소, 지원항목, 지원조건 등) 및 사업자의 변경(사업자등록증 상의 회사명, 대표자 등) ※ 행사요건, 행사규모, 심사 가점항목 등 지원금 산출에 영향을 주는 사항 변경 불가능

5) 결과보고

- 제출기한 : 행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 제출(간소화지원은 15일)
 - ※ 회계마감에 따라 2023.12.08.까지 결과보고 가능 행사에 한하여 지원
 - ※ 기한 연장 필요시, 마감일 이전 사전 협의 및 공문 제출 필요(지체 사유 등 명기)
- 접수방법 : 홈페이지(incheoncvb.or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 - 홈페이지 → 로그인 → MICE 지원 → 지원신청/관리
- 제출서류 : [첨부. 제출서류 안내 및 관련 서식] 참고
 - 공문, 결과보고, 지출증빙, 참가자 명단, 가점항목 증빙자료, 만족도 설문조사 등 등 유치·홍보·개최 각 유형별 안내에 따른 서류 제출
- 6) 지원금 지급
- 지급시기 : 결과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
- 지급방법 : 결과보고서 검토 후, 신청단체로 입금
- 승인 지원금 범위 내에서 신청기관이 선(先) 집행, 결과보고 검토 후 인천관광공사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- ※ 간소화 지원은 제외하며, 선(先)집행이 부득이하게 불가능한 경우 공사와 신청단체 협의
- 지원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수
 - ※ 발행 불가한 경우, 전자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10% 제외한 금액 지급
- 지급기준 : 참가규모, 가점항목 미이행 등 신청 대비 결과가 기준 미달 시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
 - **지원금 취소 및 삭감 기준** (개최지원에 해당)
 - 신청인원의 80% 이상 : 지원결정금액의 100%
 - 신청인원의 70% 이상 80% 미만 : 지원결정금액의 90%
 - 신청인원의 60% 이상 70% 미만 : 지원결정금액의 80%
 - 신청인원의 50% 이상 60% 미만 : 지원결정금액의 70%
 - 신청인원의 50% 미만 : 지원취소
 - ※ 국적, 성명, 소속 정보가 누락된 참가자의 경우, 불인정
 - ※ 행사기간 축소되는 경우, 축소비율만큼 지원금 추가 삭감
 - ※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, 국적과 상관없이 '국내 참가자'로 구분
 - ※ 신청 시 기재한 가점항목 미이행 시 항목 1개당 5% 삭감

□ 신청문의

- 인천관광공사 MICE뷰로 정혜선 대리(☎032-899-7434/hazel@ito.or.kr)